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2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김형동・김기웅・안철수

우재준 · 김미애 · 조지연

진종오 · 김소희 · 한지아

강명구 • 박정하 • 박대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워라밸을 중시하는 국민 인식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근로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고 눈치보지 않고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제공, 인프라 지원, 장려금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는 유연근무 및 일·육아 병행 등 소속 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그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가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

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책의 수립 등) ① 고용노	제6조(정책의 수립 등) ①
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u>의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u>
	<u>지원</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